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19
----------	-------

발의연월일 : 2026. 3. 25.

발 의 자 : 남인순 · 전진숙 · 서영석
김 윤 · 백혜련 · 김남근
윤종균 · 김현정 · 이수진
장종태 · 송재봉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국가는 장애인 · 아동 ·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배려 ·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강제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였음.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사례로 세상에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선감학원, 영화숙 · 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강제수용 피해자들은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또한 입양과정에서 입양알선기관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역시 그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크나큰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남기고 있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이 일부 밝혀졌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에서 소외되어 있음. 특히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고령 등으로 인해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UN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우리나라 정부에 "시설수용의 모든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음.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별 시설별 법률 제정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진실규명과 피해회복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보장함(안 제4조).

나. 신속하고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소송 없이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21조).

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함(안 제22조).

라. 명예회복, 추모사업, 인권교육을 통해 사회적 치유와 재발방지도모함(안 제25조).

마. 차별과 낙인을 방지하고,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또는 입양알선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이후 신속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거나 지원을 받아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시설

나. 입양을 알선하거나 알선하였던 기관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이란 일제강점기 이후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등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통보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피해자등의 권리) 피해자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4. 배상·보상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받을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피해자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및 보상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진실규명 결정 및 보상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집단수용시설등 관련 정책에 관한 검토, 인권 교육의 확대 등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 보상업무를 포함한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원(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

2. 의료지원금

3. 생활지원금

4. 자립정착금

5.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금원

③ 보상금등은 피해의 정도, 후유증의 정도, 수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업무)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보상심의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제12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심의) ① 제14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보상금등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보상금등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상금등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보상금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20조(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14조의 지급 결정 및 제19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1조(보상금등 상속의 특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 제997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보상금등 지급 결정 당시의 「민법」을 준용한다.

제22조(보상금등의 관리) 피해자가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공신탁기관을 통한 보상금등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보상금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장 명예회복 및 사회적 치유

제25조(추모·기념사업 및 공익기금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관·추모공원 건립
2. 위령·추모행사 개최
3. 기록물 수집·전시
4.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추모·기념을 위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및 추모·연구 사업을 위하여 공익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다.

1. 무연고 피해자가 진상규명 조사 후 사망하여 지급되지 못하는 보상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수익

제26조(차별·혐오 금지) 누구든지 집단수용시설등 피해자 또는 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피해회복지원센터) ①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등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2. 자립생활 지원

3. 사회적 활동 지원

4. 법률 상담 및 지원

5. 그 밖에 피해자 회복을 위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의 업무를 각 지역별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지역에 지방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지방피해회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비밀준수 의무)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심의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심의위원회가 아닌 자는 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사실조사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를 위반하여 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31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26조를 위반하여 집단수용시설등 피해자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표현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사무국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심의위원

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배상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